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」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국

2025년 12월 29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107 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비정규직 채용 시 다음 각호의 경우 시와 협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고기간, 시험단계, 외부전문가 비율 조정 등 채용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.

제49조 제2항의 별표7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징 계 양 정 기 준(제49조 관련)

징 계 사 유	징 계 기 준						비 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12. 정보공개 의무 위반							고의・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13. 기타							고의・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
비고. 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란 거짓정보 공개, 정보 숨기기 및 불복절차(행정심판, 행정소송)를 통한 정보 공개 의무 불이행 등의 행위를 말한다.

6. 두 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제재할 때에는 보다 강한 제재 기준을 따르되 한단계 높은 제재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안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3 9 0 - 7 6 4 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3(비정규직 채용절차 간소화 및 긴급채용) ① 비정규직 채용 시 다음 각호의 경우 시와 협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전협의 기한 및 내용(방식), 공고기간, 시험단계, 외부전문가 비율 조정 등 채용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.	제3조의3(비정규직 채용절차 간소화 및 긴급채용) ① ----------범위 내에서 공고기간, ----------.

현 행

징 계 양 정 기 준(제49조 관련)

징 계 사 유	징 계 기 준						비 고
	견책~감봉	감봉~정직	정직~강등	강등~해임	해임~파면	파면	
12. 기타							고의·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
비고. 1.~4. (생 략)

5. 두 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제재할 때에는 보다 강한 제재 기준을 따르되 한단계 높은 제재를 한다.

개 정 안

징 계 양 정 기 준(제49조 관련)

징 계 사 유	징 계 기 준						비 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12. 정보공개 의무 위반							고의·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13. 기타							고의·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
비고. 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란 거짓정보 공개, 정보 숨기기 및 불복절차(행정심판, 행정소송)를 통한 정보 공개 의무 불이행 등의 행위를 말한다.

6. 두 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제재할 때에는 보다 강한 제재 기준을 따르되 한단계 높은 제재를 한다.

참고자료

지방공공기관 인사·조직 운영 관련 지침 개정(2025.07.)

현 행	개 정 안
9 비정규직 관리	
가. 비정규직 채용절차 간소화	**가. 비정규직 채용절차 간소화**
ㅇ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때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, 근로계약 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하여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함	ㅇ (현행과 같음)
ㅇ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저하 등 불합리한 처우를 강요해서는 안 됨	ㅇ (현행과 같음)
ㅇ 상시·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,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여야 함	ㅇ (현행과 같음)
ㅇ 다음 각호의 경우, 사전협의 통보기한 단축 및 협의 내용(방식) 간소화, 공고기간 단축, 시험단계 축소, 시험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율 조정(예시 : 1/2 이상 → 1명 이상) 등 채용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	ㅇ 다음 각호의 경우, 공고기간 단축, 시험단계 축소, 시험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율 조정(예시 : 1/2 이상 → 1명 이상) 등 채용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

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반영(2013.06)

과제명	세부과제 번호	세부과제명
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·실효성 제고방안	010	○거짓 정보 공개, 정보 숨기기 등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
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·실효성 제고방안	014	○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

나. 거짓 정보 공개, 정보 숨기기에 대한 제재 강화(전 공공기관)

○ 임의로 정보를 수정·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**징계 기준 마련**

※ 각 기관 징계 관련규정에 정보공개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처리기준 마련

※ 정보공개법 개정 의원발의('12.6월) : 정보 위조·변조, 거짓 공개 또는 비공개, 고의의 은닉 목적 공개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(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
나. 불복절차결과에 따른 의무 이행 확보수단 미비

○ 행정심판 이행재결, 행정소송 확정판결 등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국가공무원법, 각 기관 인사규정 등에 의한 **관련자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**

※ ○○공사는 중앙행심위의 정보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, 담당자나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음('13.6월 권익위 실태조사)

○ **비공개정보의 공개**에 대하여는 형법 외에도 개별법에 제재규정이 있지만, **공개정보의 비공개**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음